2020년도 제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20년 3월 12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이 일 형 위 원

조 동 철 위 원

고 승 범 위 원

신 인 석 위 원

윤 면 식 위 원(부총재)

임지원 위원

4. 결석위원 없 음

5. 참 여 자 장 호 현 감사 유 상 대 부총재보

정 규 일 부총재보 이 승 헌 부총재보

박 종 석 부총재보 이 환 석 부총재보

서 봉 국 외자운용원장 민 좌 홍 금융안정국장

이 상 형 통화정책국장 김 현 기 금융시장국장

양 석 준 국제국장 신 운 경제연구원장

박 영 출 공보관 채 병 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성 광 진 의사팀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7호 -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에 의거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를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동 보고서와 관련하여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

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은 지난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의 배경이 된 경제전망의 전제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함과 아울러 2월 금통위 회의 이후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 가속화 등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주요국 정책대응 등 여건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지난해 말 소비와 설비투자가 다소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 흐름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한편 일부 위원은 고용상황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금년 1월까지의 지표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최근의 가계대출 증가 흐름에는 전세자금 수요 의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전세자금대출의 증가 규모 등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0년 3월)(생략)

<의안 제8호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3호 및 제64조에 의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일부 위원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가 당행, 은행, 그리고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당행은 대출을 통해 유동성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은행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MBS)을 당행 대출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담보제공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금융시장에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의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첨언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 확대에 따라 적절한 위험관리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를 신용위험이 내포된 채권으로 확대하는 만큼 다음과 같은 장치들을 마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먼저선순위채권보다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후순위채권, 옵션이 내재되어 있어 가치평가가 어려운 전환사채 등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또한대출 적격담보증권의 최저 신용등급을 우량등급 이상으로 설정하고, 신용위험이내포된 담보증권을 과도하게 납입하여 편중리스크가 증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증권의 담보납입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채권의잔존만기, 이자지급방식 등에 따라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을 차등 적용할 계획임.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담보인정가액이 위험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면서, 채권의 시장가격과 정합성을 갖도록 담보증권별로 인정가액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가격기능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금융시장의 가격지표를 반영하여 담보인정가액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계속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하 였음.

이와 같은 관련부서의 보고 후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은 초기부터 담보대출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적격담보와 관련하여 이론적으로는 중앙은행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므로 국채만을 적격담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부의 견해도 존재하지만, 실제로 미 연준, ECB 등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원칙적으로 금융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우량 증권을 적격담보의 대상으로 간주하되 가격기능을 활용하여 스크리닝(screening)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하였음. 원론적으로 중앙은행의 역할은 금융시장에서 적정 유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금융시스템 내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창출된 금융수단을 담보로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 보다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당행의 담보제도는 그동안 국채를 중심으로 하는 형태에서 최근 국채 이외의 채권으로 담보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동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지난 수 십년간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크게 발전하여 금융시스템의 주축이된 점을 반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아울러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는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는 만큼 대출제도의 변천 과정이나 배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생략)